##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명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036

발의연월일: 2021. 6. 23.

발 의 자 : 권명호・강기윤・구자근

김도읍 • 송언석 • 엄태영

유상범 • 이만희 • 최춘식

최형두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(이하 "전문예술법인·단체"라 함)를 지정하여 지원·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다만, 전문예술법인·단체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 거나 예술활동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그 지정 을 취소할 수 있음.

그러나, 전문예술법인·단체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,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전문예술법인 • 단체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

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함(안 제7조제5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##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전문예술법인·단체의 지정·	제7조(전문예술법인·단체의 지정·
육성) ① ~ ④ (생 략)	육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
	시·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
	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「행
	정절차법」에 따른 청문을 실
	<u>시하여야 한다.</u>
<u>⑤</u> ~ <u>⑦</u> (생 략)	<u>⑥</u> ~ <u>⑧</u> (현행 제5항부터 제7
	항까지와 같음)